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52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0일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더해 다자녀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u>사람이</u>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의2. ----- ----- ----- <u>사람 및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이</u> ----- -----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① ----- ----- ----- -----.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	1. -----

현행	개정안
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u>사람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 및 다자녀가구에-----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 -----<u>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서</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1)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복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발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중임.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예산	('24년) 5,706 → ('25년) 4,770억원 → ('26년) 4,888억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약 144만 가구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정위탁보호 아동 포함)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대상가구수	87.8만 가구	85.7만 가구	115만 가구	130.7만 가구	144만 가구
	지원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지원단가	'26년 세대당 평균* 36.7만원(동·하절기 통합지원)					
	* 1인 295,0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구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평균 지원단가	34.4만원	34.7만원	38.2만원	36.7만원	36.7만원
	하절기바우처	4.0만원	4.3만원	6.8만원	5.3만원	
	동절기바우처	30.4만원	30.4만원	31.4만원	31.4만원	(내역통합)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자동차감)					
신청사용기간	6월 ~ 12월 / 夏 7월 ~ 9월, 冬 10월 ~ 차년도 5월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요금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LPG·등유는 이와 같은 요금 감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자녀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에너지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에너지원별 다자녀가구 할인 주요 내용]

에너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기 (한국전력공사)	3자녀 이상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3자녀 이상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그외(4~11월) 월 2,470원 감면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3자녀 이상	월 4,000원(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및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가구를 명시함으로써, 에너지원에 따른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에너지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자녀가구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현행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

하여 소득수준 등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정하고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다자녀가구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으로서 소득수준과 주거 형태 및 에너지 이용 여건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가구 전체를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목적과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²⁾.

둘째,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기준 2자녀 이상 가구³⁾는 총 2,381,164가구⁴⁾로, 2026년 기준 3인 이상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 금액이 61만 7,000원⁵⁾인 점을 고려하면, 2자녀 이상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 4,692억원⁶⁾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⁷⁾.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2025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4,421,919	2,016,234	2,019,980	353,081	28,571	4,053

출처: 국가통계포털-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2) 아울러 개정안은 LPG·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에너지원이나 소득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다자녀가구에 에너지이용권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의 지원 범위가 당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등 입법목적과 지원 수단 간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바우처는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출함.

4) 국가통계포털 상 2자녀 이상 가구 2,405,685에서 2025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다자녀가구 24,521세대를 제외한 가구수임.

5) 3인 가구(한부모가정 등) 지원금액 532,700원, 4인 이상 가구의 지원금액 701,300원의 평균

6) 2,381,164가구 × 617,000원 = 1조 4,691억 7,800만원

7) 또한, 이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공급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요금 할인을 받고있는 다자녀가구에 중복 지원이 될 소지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뿐만 아니라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가구 유형인 다자녀가구만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경우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다른 지원 필요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⁸⁾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다자녀가구를 이미 지원⁹⁾하고 있어 정의 조항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적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8)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
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9) 2025년 기준 24,521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음.